

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2. . .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(2002.1.14, 대통령령 제17484호)됨에 따라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공무원들의 여비조정 비율로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국내여비 중 의장, 부의장 숙박비(1야당) “41,000원”을 “46,000원”으로 하고, 의원 숙박비(1야당) “22,000원”을 “25,000원”으로 조정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
- 공무원여비규정(2002.1.14, 대통령령 제17484호)

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2항의 【별표 1】 중 의장·부의장 숙박비(1야당) “41,000원”을 “46,000원”으로 하고, 의원 숙박비(1야당) “22,000원”을 “25,000원”으로 조정함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